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는 차후 과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액 산출은 물론 소득·법인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며 국세청의 자동검증자료가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손금인정에 증빙자료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계산서가 소득·법인세 등 과세자료의 기초자료가 된다. 물론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매입자료는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업자와는 다르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를 다음 거래단계에 전가시키는 법적장치이다. 반면에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증빙서류이다.

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로서의 기능, 매입세액공제 증빙의 기능은 물론 소득·법인세법의 근거과세자료로서 기능, 각종 비용인정 증빙으로서의 기능과 각종 공제증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송장, 청구서, 대금영수증 등의 부수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거래정수와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가 이루어져야 매출세액에서 거래정수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단,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거래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면서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하는 때를 재

화 등의 공급시기로 본다.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계속적인 거래처인 경우 발급편의를 위해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그냥 계산서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로서 매출부가세가 없다. 결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규정은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누구라도(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가산세는 과세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의3 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매년 2월 10일) 제출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에 따라 미제출액×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